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이◇◇는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건물)과 그 대지 157.4㎡는 원래 피고 김◇◇의 아버 소의 망 김◈◈의 소유인 것을 원고가 19○○. ○. ○.에 대금 ○○○원에 하여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미등 기건물이므로 등기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 2. 그런데 피고 김◇◇는 소외 망 김◈◈가 사망하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미등 기건물인 것을 기화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소외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써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다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 이◇◇에게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피고 김◇◇는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이◇◇는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1.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O O O O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도로명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주택

1층 74.82 m²

2층 74.82m²

지층 97.89㎡.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8}
		기 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ㅇㅇㅇ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